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4.
재정경제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1월 8일, 박민규의원 등 16인

나. 회부일자: 2026년 1월 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6. 2. 2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조세소위(2026. 3. 16.)

상정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조세소위(2026. 4. 10.)

상정, 의결(수정가결)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26. 4. 15.)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박민규의원)

지난해 국세청은 티몬·위메프 미정산대금 사태가 발생하자 입점

피해업체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 대책을 약속하였음. 그러나 일선 세무서들이 피해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면서 조사 유예제도를 충분히 안내하지 않거나, 납세자의 조사 유예 요청에도 불구하고 본청의 지시가 없다는 이유로 세무조사를 강행한 사례가 발생함. 국세청은 재발 방지 및 적극적인 세정지원 안내 등을 약속하였으나, 현행법상 경영위기에 놓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 유예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음. 특히, 질병, 장기출장과 같은 개인적인 사정은 세무조사 연기 사유로 인정하면서도,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는 납세자의 경우 그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남. 참고로 「국세징수법」의 경우 납세자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도산 우려가 있는 경우 세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막대한 경영손실로 부도 또는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하여 세무조사 유예가 가능하도록 연기신청 사유를 명확히 함으로써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 기업을 포함한 경영위기 기업에 대해 차별 없이 세정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7제2항 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검토보고서 참조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박수영)

동 개정안은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이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천재지변으로 인한 비재산적 손실 발생을 연기신청 사유에 포함하도록 수정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붙임] 1.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4.

제 안 자 :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수정이유

개정안은 천재지변이 납세자에게 미치는 비재산적 손실 등 다양한 피해 양상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움에 따라 납세자의 세무조사 연기 신청권한을 제약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천재지변으로 인해 납세자에게 비재산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수정함

수정주요내용

‘천재지변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를 ‘천재지변으로 인해 인명·재산·공급망 등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수정함(안 제81조의7제2항).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1조의7제2항 중 “천재지변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다음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해 인명·재산·공급망 등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① (생략) ②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이 나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관서의 장 에게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천재지변으 로 재산에 심한 손실 을 입은 경우, 경영하 는 사업에 현저한 손 실이 발생하거나 부 도 또는 도산의 우려 가 있는 경우, ----- ----- ----- ----- ----- ----- ----- ----- -----.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다음의----- ----- ----- ----- ----- ----- ----- -----.
	<신설>	1. 천재지변으로 인 해 인명·재산·공 급망 등에 상당 한 피해가 발생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의7제2항 중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다음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해 인명·재산·공급망 등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① (생 략)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 <u>다음의</u> ----- ----- ----- ----- -----.
<u><신 설></u>	1. <u>천재지변으로 인해 인명 · 재산 · 공급망 등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u>
<u><신 설></u>	2. <u>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u>
<u><신 설></u>	3. <u>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u>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